

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실무적 정책개발·입안 역량 강화 및 정책기획 수요 적시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조정

시도명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
서울	3.5 → 4% (+0.5%p.)	14 → 15% (+1%p.)	33 → 34% (+1%p.)	34 → 35% (+1%p.)	14.5 → 11% (Δ3.5%p.)	1%

※ 기준비율의 개정으로 실제 직급조정은 별도 검토 및 시행 필요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관련 부서와 합의하였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 강화 규제 없음

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: 해당없음
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: 원안동의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평가제외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7. 12. 14. ~ 12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율	4%이내	15%이내	34%이내	35%이내	11%이상	1%이내
----	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<b>【별표 2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b> 1. 일반직공무원							<b>【별표 2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b> 1. 일반직공무원						
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	구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문경력관
비율	3.5% <u>이내</u>	14% <u>이내</u>	33% <u>이내</u>	34% <u>이내</u>	14.5% <u>이상</u>	1% 이내	비율	4% <u>이내</u>	15% <u>이내</u>	34% <u>이내</u>	35% <u>이내</u>	11% <u>이상</u>	1% 이내
2.~ 4. (생략)							2.~ 4. (현행과 같음)						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**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**3. 미첨부 사유**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실제 증원 및 직급조정 내용이 아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
**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32)**